
2021년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주관보험사 선정 과업내역서

2020. 11.



I. 과업개요

1. 과업명 : 2021년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주관보험사 선정

2. 과업 목적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후 성취감 제고,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
- 본 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동 중에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·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활동 참여자의 단체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업체 선정

3. 계약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

4. 가입대상 및 인원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단체 상해보험(공익활동형, 시장형사업단, 재능나눔활동) 606,500명* (변동 가능)
 - * 공익활동형 590,000명, 시장형사업단 1,500명, 재능나눔 15,000명
-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단체 배상책임보험 45,000명 (변동 가능)

5. 보험료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기초예정단가 15,600원 / 1인 (만 65세 이상)
-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단체 배상책임보험 기초예정단가 5,000원 / 1인 (만 60세 이상)

6.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기준(안)

가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단체 상해보험

담보	보장금액 (단위 : 원)		담보내용
상해사망	일반 상해	150,000,000	·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
	자연 재해	50,000,000	
	뺑소니	50,000,000	
	폭발 화재 붕괴	10,000,000	
상해후유장애	일반 상해	150,000,000	·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
	뺑소니	50,000,000	
	폭발 화재 붕괴	10,000,000	
식중독 진단	1,000,000		· 음식물 섭취로 인한 중독으로 2일 이상 입원한 경우
상해입원 (1일당)	50,000		·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지급
상해통원일당 (1일당)	50,000		·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을 한도로 통원 1일당 지급(단, 보험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한도)
제3자 배상책임	20,000,000		·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
구내치료비	10,000,000		·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비용 등
영업배상 (주최자배상)	100,000,000		·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부담
화상진단 위로금	500,000		· 화상분류표에 의한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, 화상2도 이상
화상수술비	500,000		· 화상분류표에 의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
골절진단 위로금	500,000		· 골절분류표에 의한 골절로 진단
골절수술 위로금	500,000		· 골절분류표에 의한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

나.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단체 배상책임보험

담보	보장금액 (단위 : 원)		담보내용
시설소유 대인	1인당	100,000,000	·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 장애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
	1사고당	300,000,000	
시설소유 대물	1사고당	100,000,000	·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 재물을 망그러 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
인격침해/광고침해	1인당	100,000,000	· 신체 장애 이외의 인격 및 광고 침해로 인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
	1사고당	300,000,000	
구내치료비	1인당	10,000,000	·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
	1사고당	20,000,000	

7. 보험가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용어 및 범위

○ 보험가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용어 및 범위

- **공익활동**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,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

유형	세부사업 내용
노노케어	○ 독거노인, 조손가정 노인, 거동불편 노인,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,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
취약계층지원	○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·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
지역공공활동	○ 복지시설, 공공의료시설, 교육(보육)시설,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
경륜전수활동	○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, 삶의 지혜를 동세대, 아동·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
지역상생활동	○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반제품 및 제품 생산, 조달하는 활동

- **재능나눔활동**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,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재능나눔 활동

분류	활동 내용
안전예방	○ 시설 안전관리 활동 및 지역 내 불편시설을 찾아 개선 요청하는 활동
상담안내	○ 노인상담 및 학대예방 등 인권지킴 활동
학습지도	○ 교육 및 학습 지도 활동(체육활동제외)
문화예술	○ 음악회, 공연 등 문화공연 활동
기타	○ 활동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

- **시장형사업단**은 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,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활동

* 운송사업(아파트택배, 지하철택배)에만 상해보험 적용

-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(지역사회 돌봄, 안전, 공익증진 등)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

유형	세부사업 내용
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	○ 아동돌봄지원, 청소년 시설지원, 교육시설 학습보조, 건강가정서비스 지원
취약계층 전문서비스	○ 장애인서비스지원 , 노인관련 시설지원 ,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, 시니어 인지활동 지원
공익증진 전문서비스	○ 시니어 컨설턴트, 소비피해예방지원, 안전 및 방역지원, 장기요양서비스지원, 공공행정업무지원

II. 과업 일반사항

1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단체 상해보험

가. 보 험 종 류 :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단체 상해보험

나. 보험료 적용 : 담보요율에 따른 단일 보험료 적용

다. 보험료 납부 : 수행기관별 (약 1,300여개) 직접 납부

라. 적 용 범 위 :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사망 · 후유장애 및 의료 · 입원 ·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상

- ‘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중’이라 함은

- ①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(활동, 교육활동)에 참여 중인 때
- ②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
- ③ 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

2.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단체 배상책임보험

가. 보 험 종 류 :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단체 배상책임보험

나. 보험료 적용 : 담보요율에 따른 단일 보험료 적용

다. 보험료 납부 : 수행기관별 (약 600여개) 직접 납부

라. 적 용 범 위 : 사회서비스형 사업 참여(근로)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보상

○ 사회서비스형 사업 참여 중에 발생한 대물·대인에 대한 손해보상

○ 사회서비스형 사업 참여 중에 발생한 인격·광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

- ‘사회서비스형 사업 참여(근로) 중’이라 함은

①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업무(교육 및 회의 포함)에 참여 중인 때

② 근로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

③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

Ⅲ. 과업 세부사항

1. 입찰방법 : 조달청 나라장터 G2B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

2. 보험사 선정

○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
계약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” 적용

- (선정원칙) 1인당 기초 예정단가 공익활동형·시장형사업단·재능나눔활동 15,600원, 사회서비스형 5,000원 내외의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
- (선정방법)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시한 <보험보장범위 및 보장내역>을 바탕으로 제안서 심사평가를 거쳐 집계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험사를 협상우선순위 업체로 선정

3. 참가자격

- 보험업법 제4조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(공고문 - 입찰자격 참조)
- 입찰일 공고 현재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이 150% 이상인 업체
 - * 보험회사는 A.M Best 신용등급 재무건전성등급(FSR) 기준 “B+”등급 이상 평가받은 보험사이어야 함
- 최근 금융감독원 ‘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’ 의 양호 등급 6개 이상의 평가이어야 함
-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한
- 공동수급 구성 불가능

4. 제안요구 조건

가. 관리운영(※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)

- 보험사의 보상·운영·상담(콜센터 등)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(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 및 처리)
-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내에 상해보험 관리시스템 운영
- 피보험자 개인정보 유출 금지
- 보험담당자의 업무 실수(오기, 누락 등)로 인한 피해 시 배상책임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
 - * 보험상품, 보상청구절차 등 관련 내용 안내 및 설명 자료 배포
- 보상관리 체계(청구방식, 보험금 지급 거부 관리방안 등) 제시
- 보상 청구 및 보상 현황에 대한 통계 관리 및 제출(보험기간 종료 이후 보상 완료까지 관리 및 제출)
 - * 제공내용은 선정이후 즉시 보건복지부(한국노인인력개발원)와 협의하여 결정

나. 안전관리지원

- 보험가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(동영상 자료, 안전매뉴얼), 참여자 안전 교육지원 등

다. 업무이해도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단체 상해보험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단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유형 파악 등

라. 기타사항

- 보험가입대상자는 계약 당시 확정하지 않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자 숫자로 통보
- 과오납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요청이 있을 시 이를 확인하고 타당할 경우 즉시 환급처리
- 공동수급 구성 불가능
- 기타 이 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

5.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

-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(80%)와 가격평가(20%)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
-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(80점 기준, 68점)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-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
-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.
- 협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보험보장범위, 보험단가 등을 기준으로 협상 순위에 따라 진행
-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1차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고 우선협상선정 결과를 서면통보, 미 선정업체는 통보를 생략
- 1차 협상 후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20일 이내에 2차 협상을 진행함
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
-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

6. 보험계약 처리

○ 보험계약 당사자

- (보험계약자) 한국노인인력개발원
- (피보험자)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
- (보험수익자) 피보험자(상해발생 시 모든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)
- (개인정보보호)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목적 외 이용 또는 유출 금지

○ 계약방법
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1인당 보험료 단가계약 및 보험가입 후 약 600~1,300여개 수행기관에서 보험료 납부

○ 보험계약 내용

- 보험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'21.12.31. 만기 기준으로 함
- 가입예정인원과 계약 기초금액은 조정 가능

○ 보험해약

- 보험 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
- 보험 기간 중 보험해지
 -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 해약 사유 발생 시 단기 요율 적용
 - 보험사의 사유로 보험 해약 사유 발생 시 일할 요율 적용
- 보험료 환급·과오납 정정보험료 및 기타 보험료 환급 보험료는 입금수행기관으로 보험료 환급 가능

7. 보험금 청구 및 지급

- (보험금 청구) 보험약관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
- 보험금 청구 절차
 -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(보험금 청구양식은 보험사 소정양식)
 -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
 - 보험사는 사고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신속히 보험금을 결정하고, 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, 그 결과를 소속 수행기관에 통보
 -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(상법 제662조)
 - 개발원 요청 시 보험금 지급 처리 결과를 즉시 제공
- 기타 보험조건 등 관련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이에 준하는 일반·특별약관으로 적용

8.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

가. 일반사항

-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,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
- 제안서의 크기는 A4 용지, 기본적으로 단색(필요시 칼라), 양면종단 (파워포인트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) 작성

-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
- 제안서는 20페이지 분량으로 제출
- 동 제안요청서 관련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‘원본 대조필 명기’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
- ‘~ 할 수도 있다’, ‘가능할 것이다’, ‘~ 할 예정이다’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의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
-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,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함
- 제안서는 과업의 주요내용(과업내역)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
-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
-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
-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,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
- 제안요약서의 내용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함
-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“해당 없음”으로 기술
-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

나. 제안서의 효력
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가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
-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

다. 제안관련 유의사항

-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-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
-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,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

IV. 제안서 평가 기준표

구 분			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방법																					
기술 능력평가 (80%)	객관적 지표 (20%)	총자산규모 평가 (5점)	- 총자산규모 평가 · 50조 이상 : 5점 · 30조 이상 50조 미만: 4점 · 20조 이상 30조 미만 : 3점 · 10조 이상 20조 미만 : 2점 · 10조 미만 : 1점	5	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- 최근 공시된 자료로 제출																					
		지급여력 비율 (5점)	- 지급 여력 비율 · 250% 이상 : 5점 · 200% 이상 250% 미만 : 3점 · 150% 이상 200% 미만: 1점 · 150% 미만 : 참가 자격 미달	5																						
		신용평가 등급 (5점)	- 신용평가 등급(A.M. Best 신용등급 재무건전성등급(FSR) 기준) <table><tr><th>등급</th><th>정의</th><th>배점</th></tr><tr><td>A+~A++</td><td>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극히 높음</td><td>5</td></tr><tr><td>A-~A</td><td>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매우 높음</td><td>3</td></tr><tr><td>B+~B++</td><td>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우수함</td><td>1</td></tr><tr><td>B-~B</td><td>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충분함</td><td rowspan="4">참가 자격 미달</td></tr><tr><td>C+~C++</td><td>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다소 존재</td></tr><tr><td>C-~C</td><td>보험 계약사항 이행능력이 다소 낮음</td></tr><tr><td>D</td><td>보험 계약사항 이행능력이 매우 낮음</td></tr></table>	등급		정의	배점	A+~A++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극히 높음	5	A-~A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매우 높음	3	B+~B++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우수함	1	B-~B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충분함	참가 자격 미달	C+~C++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다소 존재	C-~C	보험 계약사항 이행능력이 다소 낮음	D	보험 계약사항 이행능력이 매우 낮음	5
		등급	정의	배점																						
A+~A++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극히 높음	5																								
A-~A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매우 높음	3																								
B+~B++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우수함	1																								
B-~B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충분함	참가 자격 미달																								
C+~C++	보험 계약 이행능력이 다소 존재																									
C-~C	보험 계약사항 이행능력이 다소 낮음																									
D	보험 계약사항 이행능력이 매우 낮음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비자 보호실태 평가등급 (5점)	-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등급 · 양호 이상 등급 9개 이상 : 5점 · 양호 이상 등급 8개 : 4점 · 양호 이상 등급 7개 : 3점 · 양호 이상 등급 6개 : 2점 · 양호 이상 등급 5개 이하 : 참가 자격 미달	5																								

주관적 지표 (60%)	관리운영 (30점)	- 가입 및 보상절차 등 업무의 효율성 (효율적 가입 운영 및 보상 여부)	10	평가 위원에 의한 평가
		- 보험가입자 관리운영 방법 · 참여보험사(담당자)의 전담인력배치 · 보상관리 체계 및 보상시스템 운영 등	10	
		- 사고분석보고 및 보상관련 통계관리	10	
	안전관리 지원 (15점)	- 보험가입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·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(동영상 자료, 안전매뉴얼), 참여자 안전 교육지원 등	15	
	업무 이해도 (10점)	- 참여보험사(담당자)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도 - 참여보험사(담당자)의 의지 및 관심도	10	
	보장내용 (5점)	- 보장범위 및 추가특약 제안여부 · 기본 보장내역 외 추가특약 제안여부	5	
가격평가 (20%)		-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실시	20	입찰서 제출에 의한 평가
계			100	